

②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21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63호

2. 폐지이유

○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는 사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행자부(당시 내무부)의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2004.1.14 행자부의 승인권과 업무처리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전체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동 조례제정 당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는 사전 조례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.1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- 그러나 조례제정 목적을 보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국제화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는

존치의 필요성도 있으나, 그 동안 조례규정에 의거 국제도시간 자매
결연을 맺은 도시가 없으며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점 등을
감안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5. 폐지근거

-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(대통령령 제15776호, 98.4.15)
- 행자부의 승인권과 업무처리규정 폐지(2004.1.15)